# 대학원 학과주임교수,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에 관한 시행세칙

[시행 2022.8.1.]

- 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7장의 학과주임교수,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- 제2조(학과주임교수) 학위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(전공)주임교수를 둔다.
- **제3조(학과주임교수의 임무)** ① 학과주임교수는 석·박사학위과정의 학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9.3.1.>
  - ② 학과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학과의 전체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제4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수학지도, 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② 지도교수의 자격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다만, 1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없다. <개정 2009.3.1., 2012.10.
  - ③ 논문지도교수가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명예교수 및 초빙교수로 임용 될 경우에는 재직기간동안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2.8.1.>
  - ④ 당해 학생이 대학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,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한다. <신설 2009.3.1.>
  - ⑤ 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할 수 있다. <신설 2011.3.1., 개정 2012.10.1.>
  - ⑥ 지도학생이 학위논문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학위가 취소되거나 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지도교수도 2년간 지도교수의 자격을 정지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등의 연구윤리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3.1., 개정 202 0.07.01.>
  - ⑦ 논문지도교수는 첫 학기말 또는 두 번째 학기말까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 <신설 2019.1.21., 2022.8.1.>
- **제5조(공동지도교수)** ①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, 장기해외출장, 파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 및 동일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 단, 그 명칭을 부지도교수라 한다. <개정 2011.3.1.>
  - ② 제1항의 경우에서 우리 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공동지도교수의 자격 및 위촉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. <개정 2011.3.1.>
  - ③ 논문에는 공동 지도교수명을 병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1.>
  - ④ 삭제 <2011.3.1.>
  - ⑤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와 학과(전공)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 <신설 2019.1.21.>
- **제6조(지도교수의 변경)** 지도교수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사유(질병, 휴직, 국외파견 등)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,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,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